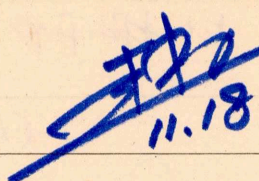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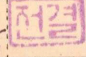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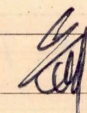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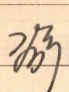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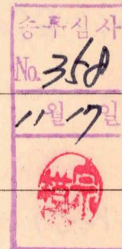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공원 23200-19	(전화: 773-3762)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1989. 11.		
보조 기관	환경부장관  공원과장  공원관리과장  기안책임자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송무계장 	문서통제  발송인
경유 수신 참조	각 산 참 조	발신 명 의	시 장 
제 목	사직공원 수영장 강제철거 손해배상 청구사건 응소 (상고)		
(제 1 단)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 건		
	1. 공원 23200-7 (89. 1. 12) 호와 손해배상 청구사건		
	응소방침(항소)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사직공원 제일수영장 강제철거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89.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시 승소		
	판결사안으로 원고 취병목이 이에 불복 89. 10. 18 별첨과 같이		
	대법원에 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가 제기되었기 다음과		

같이 응도 조사 함이다.

가. 사건번호 및 사건명 : 89 다카 028102 손해배상(기)

나. 사건당사자 : 원고 (상고인) : 최 병목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다. 사건 개요 및 원고 청구요지

○ 68. 3 - 사직공원내 민자유치 수영장 설치허가 (성기조)

○ 69. 6. 12 - 동수명장 시설물 1차 무상 사용허가 (수리가과

성기조, 사용기간 68. 8. 1 ~ 78. 3. 7 까지)

○ 71. 3. 7 - 수영장 시설물 2차 무상사용 기간 연장 (78. 3.

8 - 86. 9. 7 까지)

○ 77. 10. 31 - 수리가과 명칭변경 (성기조 → 최 병목)

○ 86. 7. 22 - 수영장 위탁관리 계속 관리 신청 (원고 최 병목)

- 허가 불가 회사

○ 86. 8. 20 - 수영장 위탁관리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사건번호 86-197)

○ 86. 11. 10 - 행정심판 청구 기각

○ 86. 12. 29 - 86. 12. 9 자 무단 점유 행정 대집행 고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사건번호 87-8-11)

o. 87. 2. 13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

o. 87. 1. 6 -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효력정지 신청 (86부228)

o. 87. 2. 25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결정 (86부228)

o. 87. 3. 7 - 퇴거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86나1536)

o. 87. 11. 9 - 이 사건 소를 각하 판결.

o. 88. 3. - 원고 취병목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응소 판결결정

(서울 민사 지방법원)

o. 88. 11. 14 - 서울 민사 지방법원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o. 88. 11. 25 - 서울고등법원 원고 항소 제기 (88나47842)

o. 89. 9. 22 - 서울고등법원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o. 89. 10. 18 - 대법원 원고 상고 제기

o. 90. 1. 12
* 상고 청구요지 - 별첨 상고장 참조.

라. 응소(상고) 이유 : 원고의 청구 위법 부담.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 본 사건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다음직위를 소송담당자로 지명 업무를 수행

하과 합니다.

o. 소송담당자

소 속	직 명	성 명	비 고
			2

종료 구청	공원 녹지과장	유 금 종	4
"	지방임업기사	유 락 준	
"	지방임업기원	김 양 수	
서울시 환경녹지국 공원과	지방임업기사보	허 도 행	

첨 부 : 상 고 장 1 부 , 곁 .

(제2안) 514

수 신 : 법무담당관

발신 : 공원과장

제 목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담당자 지명의뢰

1. 종료구 사적공원내 제1안 수영장 강제철거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 상고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응소 (상고)기로 결정
하였으나 소송대리인 선임과 다음직원을 소송 담당자로 지명하며
구치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및 사건명 : 89다카 028102 손해배상(기)

나. 사건당사자 원고 (상고인) : 최 병 목

피고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다. 항소 제기 연월일 : 89. 10. 18

라. 소송 담당자 : 제1안 바깥 소송 담당과 이기서행

첨 부 : 응소방침서 사본 1부

(제3안)

수신: 종로구청장

참조: 기획감사과장 (공원복지과)

제목: 사직공원내 수영장 강제철거 손해배상 청구사건 응소차서

1. 공민 23200-527 (89.10.13) 호와 관련하여,

2. 위호와 관련 사직공원 제일수영장 강제철거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뒤고 최병욱이 89.10.18 별첨과 같이

대법원에 상고 제기한바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적극응소 송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며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 하기 바랍.

가. 사건번호및 사건명: 89 다카 028102 손해배상(기)

나. 상고 제기 년월일: 89. 10. 18

다. 조치사항: 답변서 작성준비

첨부: 상고장 1부 끝.

005

송 무 용 전

수 신

공 익

과장

1989. 11. 9.

사 건 명

소해개상 (기)

사건번호

89다가 원고 (신정인) 최병욱
028102 피고 (신대갑) 김홍익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적 기 사 항

1. ^{강요}소방침 결정 1989년 11월 20일 까지
2. 소송대리인 및 1989년 11월 20일 까지
소송수행자 지명의뢰
3. 증거 제 시 년 월 일 까지
4. 증인 신청 년 월 일 까지
5. 기 일 년 월 일

: 분

첨부: 상고허가 신청기록 첨부 통지서 부록

지휘관	유영파	(인)	계	
인사담당	1989. 11. 10	(인)		
법무담당				

법 무 담 당 관

[Handwritten Signature]

2831

6

대 법 원

상고허가신청기록접수통지서

서울특별시청

피 고 서울특별시 시장고건 귀하

사건 89다카028102 손해배상(기)

원 고 (신청인) 최병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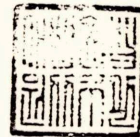
피 고 (상대방) 서울특별시

그

위 사건에 관한 소송 기록을 원심 법원으로부터 송부 받았으므로 통지 합니다.

1989 . 11 . 06 .

법원 사무관 정 병 진



- 주의 1.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 1통과 그 부분 5통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재판부 카부

008

FAX: (02) 274-6392

7

상 고 허 가 신 청 서

원고 (상고허가 신청인) 최 병 옥

서울 종로구 사직동 1의 48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경수근, 최성근, 전재중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2206

피고 (상고허가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고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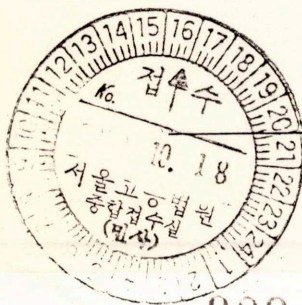
대표이사 최 관 식

위 당사자간 서울 고등법원 88나 47842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89. 9. 22.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 (신청인) 의 께소부분에
관하여 불복이므로 상고코져 상고허가를 신청합니다.

원 판 결 의 표 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 결			결재 (공람)		
접수일시	1989. 11. 9	번 호	>166		
처리과			1608		



009

金·宋 合 同 法 律 事 務 所

金平祐·景洙謹·崔聖坤·田在重·姜明俊

서울·中區 忠武路 3街 60-1 (극동빌딩 2206호)

電話 : (02) 274-6788 (대표) 서초사무소 : 직통 536-8304, 교환 537-5582

TELEX : KSLAW K28677

FAX : (02) 536-8305

FAX : (02) 274-6392

8

상 고 취 지

원판결의 원고(상고허가신청인)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 고 허 가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상고를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상 고 허 가 신 청 이 유

추후 제출하겠음.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 상고허가신청서 부분

金·宋 合 同 法 律 事 務 所

金平祐·景洙謹·崔聖坤·田在重·姜明俊

010

서울·中區 忠武路 3 街 60-1 (극동빌딩 2206호)

電話 : (02) 274-6788(대표) 서초사무소 : 직통 536-8304, 교환 537-5582

TELEX : KSLAW K28677

FAX : (02) 536-8305

FAX : (02) 274-6392

8

1989. 10.

위 원고(상고허가신청인)소송 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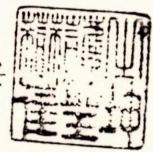
변 호 사 김 평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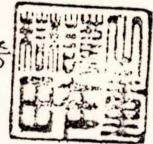
변 호 사 경 수 근



변 호 사 최 성 곤



변 호 사 전 재 중



대 법 원 귀증

金·宋 合 同 法 律 事 務 所

金平祐·景洙謹·崔聖坤·田在重·姜明俊

011

서울·中區 忠武路 3 街 60-1 (극동빌딩 2206호)

電 話 : (02) 274-6788 (대표) 서초사무소 : 직통 536-8304, 교환 537-5582

TELEX : KSLAW K28677

FAX : (02) 536-8305

FAX : (02) 274-6392

10